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정 2014.07.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7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안전사고 또는 사고 징후 등 시설물에 대한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하며, 1·2종 외 시설물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3. “시설물 재난상황”이란 시설물 안전사고 및 사고 징후 등을 말하며, 그 종류는 제9조와 같다.
4. “시설물 안전사고”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5. “사고 징후”란 시설물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6. “연습 및 훈련”이란 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용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예방활동을 말한다.
7. “재난영상”이란 재난상황을 동영상, 사진, 문자 등 영상으로 변환한 것을 말한다.

8. “사용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다수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로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9. “기관관리자”란 사용기관에 소속되어 기관사용자의 정보를 입력·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기관사용자 또는 사용기관내의 현장 담당자 등에게 재난영상을 전송하는 자를 말한다.
10. “기관사용자”란 사용기관이 관리·감독하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관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11. “일반사용자”란 기관관리자 및 기관사용자이외의 자로서 재난영상을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12. “운영기관”이란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시설물 재난관리 및 정보 공유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재난영상의 전송 체계

제4조(재난영상의 전송) 시설물 재난상황에 대한 재난영상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이 시스템에서 정한 수신번호(#4949)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 등록 및 관리) 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등은 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사용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관의 기관관리자는 해당기관의 기관사용자를 입력·관리하여야 하고, 기관사용자가 제보한 재난영상의 자동 전송

경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기관사용자는 제보한 재난영상의 자동 전송을 위해 이 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 ④ 일반사용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난영상을 제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난영상의 전송경로를 따로 지정하여 제보할 수 있다.

제6조(재난영상의 전송 절차) ① 영 제16조의3제3항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이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 재난영상을 공유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재난영상의 전송 절차에 대해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이 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재난영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1. 기관사용자가 제보한 재난영상은 제5조제2항에서 지정한 경로를 통해 자동 전송되도록 한다.
 2. 기관사용자가 제보한 재난영상을 받은 기관관리자는 재난대비 및 재난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3. 공단은 일반사용자가 제보한 재난영상을 분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히 전송하고, 재난대비 및 재난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일반사용자가 제보한 재난영상을 확인한 경우 확인 및 조치 여부를 제보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발생 위치 확인) ① 공단은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재난영상을 제보한 자에게 재난 발생 위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보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공단은 제보된 재난영상에 대해 재난대비의 시급성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보한 자를 통하지 않고 즉시 재난 발생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8조(현장확인) ① 영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공단은 이 시스템에 제보된 재난상황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재난상황이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기관관리자 또는 기관사용자가 시설물 사고 징후를 발견하여 제보한 재난영상 중 사용기관에서 긴급한 조치가 불가능하여 공단에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2. 일반사용자가 제보한 영상 중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등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현장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보내용을 즉시 이첩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제9조(재난상황의 종류) 이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재난상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 안전사고
2. 사고 징후
3. 연습 및 훈련
4. 그 밖의 제보영상

제10조(조치결과의 통보)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는 시

설물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 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조치결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2. 시설물 위치
3. 사고일시
4. 사고내용
5. 피해내용(인적·물적)
6. 조치결과
7. 향후 계획

제11조(실적보고) ① 공단은 이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분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사용자 현황
2. 시설물 재난상황 제보 현황
3. 주요 재난상황 제보 사례
4. 그 밖의 특이사항

제4장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12조(시스템 관리·운영) ① 공단은 시스템을 통해 제보된 재난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개선과 보급, 이용자 교육 및 재난영상의 관리 등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 외에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시스템의 변경) ① 공단은 해당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스템을 변경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에 대한 주요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시스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보안) 공단은 이 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 베이스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백업) ① 공단은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복구) ① 공단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7조(표준연계서비스) ① 영 제16조의3제3항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이 시스템과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간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같이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연계표준을 따라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시스템간 연계를 위해 표준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표준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4. 7.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표준연계서비스) 제17조에 따른 표준연계서비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